

의안번호	2208159
의 퇴 인	서영교의원
회 답 일	2025.3.14.
추계번호	25D086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3(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6항 신설	검사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19세 미만인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의3(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6항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국선변호사 선정(안 제8조의3제6항 신설)

○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¹⁾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

- 1)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재 특정강력범죄 중 ‘살인, 강도,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범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와 관련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지원하고 있고²⁾, 2025년 기준 국선변호사 지원 1건당 수당은 25만 8천원임
 - 최근 5년 동안 일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에 한정)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지원 건수는 연평균 35,300건임

[표 1] 최근 5년간 일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현황: 2020~2024년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성폭력	22,849	25,648	26,340	23,987	24,043	122,867
아동학대	3,158	12,740	12,629	12,927	11,396	52,850
장애인학대	-	58	192	222	292	764
인신매매	-	-	-	14	9	23
합 계	26,007	38,446	39,161	37,150	35,740	176,504

자료: 법무부

- 개정안에 따라 현재 국선변호사를 선정·지원하지 않는 ‘살인, 강도,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범죄’의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지원하는 경우 국선변호사 수당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법무부에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수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고,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의 규모를 현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려워 개정

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2)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마.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안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지원 건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법무부에서 제출한 흉악사범(살인, 강도 등) 접수 및 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최근 3년간 흉악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 2022~2024년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사건접수	처분계	처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22	3,698	3,606	864	260	0	850	1,632
2023	3,635	3,668	894	291	0	1,385	1,098
2024	4,697	4,649	818	310	0	782	2,739

주: 흉악사범 산출죄명 : 살인의죄(살인, 존속살해, 영아살해, 촉탁승락에의한살인, 자살교사,위계에의한 촉탁살인등), 강도의죄(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살인), 특가법(보복범죄 등)

자료: 법무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